

열요금 연료비 연동제 표준화 방안



2013. 11. 28

이 상 엽

목차



I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II. 연료비 연동제의 문제점

III. 연료비 연동제 표준화 방안

IV. 열요금 신고서 검증 합리화 방안



I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열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의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
 - 각 사업자의 공급규정 이외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
 - 사업자별 요금산정 및 제출자료의 양식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
- 32개 사업자의 열요금 조정 신고에 대한 정부의 검증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실정
- 따라서,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산정절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열요금 조정 신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



II. 연료비 연동제의 문제점

● 운영상의 문제점 (사업자 측면)

- 지난 5년 물가인상 억제 등의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준용을 탈피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
- 연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라 연료비가 회수가 어려워져 대부분의 중소사업자는 현금흐름 악화 등 심각한 운영위험에 직면하여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
 - ‘12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, 한남, GS파워, 안산도시개발 등 몇 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

● 운영상의 문제점 (사용자 측면)

- 연료비 연동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이 위배되고 효율적인 열사용 유인을 저해
 -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시그널을 전달하지 못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
 -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용자의 유인저하 및 정책효과 감소
 - 요금의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, 미래소비자에게 상승된 요금이 전가되는 문제

● 제도상의 문제점

-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
 - 연료비 범위, 조정시기, 사용요금 조정,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
 -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‘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’ 고시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의 별첨에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
- 공급규정에 대한 관리·감독 부족
 - 연료비 연동제는 각 사업자의 공급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검토 및 감독이 필요

● 제도상의 문제점

➤ 불완전한 정산제도

- 연료비 변동과 열요금 조정간의 시차로 인한 연료비와 요금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정산분과 실제발생한 원가사이에 오차가 발생 (재정산제도가 필요)

➤ 저가열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

-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저가열원 도입시 열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구조로 저가열원 도입의 유인이 부재



III. 연료비 연동제 표준화 방안

❖ 연료비 범위

- **(현황)** 모든 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연료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연료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
- **(시행지침 안)** 연료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
 - **연료비의 범위**
 - 연료비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열원시설에 투입되어 열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(LNG, B-C유, LSWR 등)와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비용(소각장 수열, 발전사 수열 등)을 말한다.

❖ 열요금 조정 시기

- **(현황)** 대부분의 사업자는 3개월 마다 조정한다고 공급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요금 조정 시기 및 조정 기준은 다른 실정
 -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7개 사업자
 - 정기조정: 3월, 9월 (요금조정률이 1% 이상일 경우)
 - 중간조정: 6월, 12월 (요금조정률이 3% 이상일 경우)
 - 부산시 등 3개 사업자: 사용연료 구입가격 변동률이 2%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익월 사용분부터 적용
 - 서울시: 연료비 변동률이 1% 이하인 경우에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
 - 충남 도시가스: 매 3개월 마다 요금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요금조정률이 $\pm 2\%$ 이상일 경우만 조정

❖ 열요금 조정 시기

- **(방안 1)** 확정적인 기간을 조정주기로 하는 방안 (한국지역난방공사 방식과 유사)
 - 정기조정은 연료비 연동 조정률이 $\pm 1\%$ 이상일 경우 3월, 9월을 산정기준
 - 중간조정은 연료비 연동 조정률이 $\pm 3\%$ 이상일 경우 6월, 12월을 산정기준
 - 정기 · 중간조정은 연료비 연동 조정률이 $\pm 10\%$ 이상일 경우, $\pm 10\%$ 미만으로 조정하고 미반영분은 자기 요금조정과 정산 시에 반영
- **(방안 2)** 연료비의 변동률이 허용변동률을 초과할 때마다 연료비를 조정하는 방안

❖ 열요금 조정 시기

● 방안별 평가

구분	방안 1 (확정적인 조정주기)	방안 2 (허용 변동률 초과시 마다)
장점	- 정산 업무가 단순 - 검증 및 비교가능성이 높음	연료비변동의 반영시차가 적어 사업자의 부담이 적음
단점	- 연료비변동의 반영시차가 발생함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- 반영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정산 제도로 보완	- 조정이 빈번할 경우 사업자 및 감독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 - 제출 자료의 검증 효율성이 낮음 - 사용자의 수용도가 낮을 가능성

- 반영시차가 발생하지만 정산제도가 있으므로 1안처럼 확정적인 기간에 조정을 함으로써 검증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

❖ 열요금 조정 시기

● (시행지침 안)

➤ 열요금 조정 시기

- ① 정기조정(연료비연동 조정률이 $\pm 1\%$ 이상일 때만 적용)은 3월, 9월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변경된 열요금 단가는 3월1일, 9월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중간조정(연료비연동 조정률이 $\pm 3\%$ 이상일 때만 적용)은 6월, 12월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변경된 열요금 단가는 6월1일, 12월1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정기조정이나 중간조정 시 연료비연동 조정률이 $\pm 10\%$ 이상일 때는 $\pm 10\%$ 미만으로 조정하고,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과 정산시에 반영한다.
- ④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비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으며, 열요금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❖ 조정 대상 주기

● (시행지침 안)

➤ 조정대상 연동주기

- 연료비 연동제 요금조정을 위한 연료비산정 대상기간을 6개월로 하며,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
구 분	3월 조정	6월 조정	9월 조정	12월 조정
연료비산정 대상기간	직전년도 7~12월	직전년도 7~12월	당해년도 1~6월	당해년도 1~6월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- **(현황)**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능성이 낮고 연료비 변동과 요금상한적용 단위의 변화에 따른 조정률 구분이 되지 않음

➤ $\text{조정률} = (\text{단위당총괄원가} - \text{종합열판매단가}) / \text{종합열판매단가} \times 100$

- 단위당 총괄원가: 연료비원단위+요금상한적용원단위
- 연료비 원단위: 직전 연동주기 총연료비/직전 연동주기 열판매량
- 요금상한적용원단위: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지정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
- 종합 열판매단가: 직전 요금변경 신고시 조정률 산정에 반영된 단위당 총괄원가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- 실제 요금 조정시에 조정률에는 정산원단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용어를 수정할 필요
 - 단위당 총괄원가=연료비원단위+요금상한적용원단위
 - 조정 단위당총괄원가=연료비원단위+요금상한적용원단위+정산원단위
 - 종합열판매단가를 직전 조정 단위당총괄원가로 수정할 필요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- (방안 1) 요금상한적용원단위 변동분을 배제한 연료비연동 조정률 사용하고 사용요금 단가 산정은 현행방식을 그대로 사용
 -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여부는 연료비연동 조정률을 사용
 - 연료비연동 조정률=(당기 조정단위당총괄원가-직전 조정단위당총괄원가)/직전 단위당 총괄원가
 - 요금상한적용원단위와 연료비원단위가 동시에 인상된 경우에는 요금상한적용원단위가 먼저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
 - 사용요금은 현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방식을 사용
 - 사용요금단가= 현행 사용요금 $\times$ (1+조정률*/사용요금매출비율)
 - 즉, 사용요금 조정에 연료비 변동분과 요금상한적용원단위 변동을 모두 포함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- (방안 2) 요금조정률을 연료비연동 조정률과 요금상한적용단위 조정률로 구분
 - 조정률= 연료비연동 조정률+요금상한적용원단위 조정률
 - 연료비연동 조정률= $(\text{당기조정단위당총괄원가} - \text{직전조정단위당총괄원가}) / \text{직전조정단위당총괄원가} \times 100$
 - 사용요금단가= 직전 사용요금단가 $\times (1 + \text{연료비연동 조정률} / \text{열매출액중 사용요금 매출액 비율})$
 - 요금상한적용원단위 조정률은 사업자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할 필요-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가 필요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● 방안별 평가

구분	방안 1 (연료비 연동 조정률을 산정하고 사용요금 단가 조정방식은 현행대로 유지)	방안 2 (조정률을 연료비연동 조정률과 요금상한 적용원단위 조정률로 분리)
장점	- 연료비연동 조정률을 따로 두어서 이해가능성을 제고 - 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적용이 쉬움	-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 -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적용이 쉬움
단점	요금상한적용원단위 변동분이 사용요금 조정시 반영되어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	요금상한적용단위를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에 배분할 경우 자의성 개입여지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● (시행지침 안)

➤ 연료비연동 조정률 산정

- 사업자는 조정단위당총괄원가의 변동률을 직전 조정단위당총괄원가로 나누어 산정한 연료비연동 조정률을 기준으로 열요금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.

$$\text{* 연료비연동 조정률} = \frac{(\text{당기 조정단위당총괄원가}^{1)}) - \text{직전 조정단위당총괄원가}^{2)})}{\text{직전 조정단위당총괄원가}^{2)}}$$

1) 당기 단위당총괄원가 + 당기 정산원단위 = (당기 연료비원단위 + 직전 요금 상한적용원단위) + 당기 정산원단위

2)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+ 직전 정산원단위 = (직전 요금변경 신고 시 적용된 연료비원단위 + 직전 요금상한적용원단위) + 직전 요금변경 신고 시 적용된 정산원단위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- 조정단위당총괄원가는 연료비원단위에 직전 요금상한적용원단위와 정산원단위를 합하여 계산한다.
 - 연료비원단위(원/Gcal) = 조정대상 연동주기의 총 연료비/조정대상 연동 주기의 열판매량
 - 중간조정인 경우 총 연료비는 “5. 중간조정 시 총 연료비 산정 기준”에 따라 산정된 금액
 - 요금상한적용원단위(원/Gcal) :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(이하 “요금상한고시”라 합니다)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
 - 정산원단위는 “7. 연료비 정산”에 따라 산정된 금액

❖ 조정률과 사용요금

➤ 사용요금 단가

- 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열요금표 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.
 -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= 직전 요금변경 신고 시 적용된 사용요금 단가 $\times (1 + \text{연료비연동 조정률}/q)$
 - 연료비연동 조정률은 “4. 연료비연동 조정률 산정”에 의한 조정률
 - “q”는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의 열매출액 중 난방용 사용요금 매출액 비율

❖ 연료비 정산

● (현황) 사업자 공급규정상 정산 방식

➤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

- 정산원단위 = (총연료비-(연간판매수익(정산분제외)-요금상한 적용단위)×연간 열판매량))/예산서 기준 예상 열판매량
- 정산원 단위 계산시 연료비 과부족분 회수가 일어나는 시기의 예상 열판매량으로 연료비 과부족액을 나누어 주므로 합리적

➤ 서울시

- 정산 사용요금 = 현행사용요금×[1+연간연료비 보존 과부족액/사용요금수입액]
- 연료비 보존과부족액 = 연간 연료비 증감액-연간 사용요금수입증감액
- 사용요금수입액 = 현행 사용요금×정산기의 실적 열판매량

❖ 연료비 정산

- **(문제점)**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산요금 계산시 예산서상 예상 판매량을 사용함에 따라 판매량 예측이 부정확할 경우 정산금액이 과대 또는 과소 책정될 가능성
 - 정산 후 잔액에 대한 재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 정확한 정산이 어려워지는 문제

❖ 연료비 정산

- (방안 1) 검증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연료비 과부족액 개념을 구체적으로 산식에 포함한 후 이를 정산기의 실적 열판매량으로 나누어 정산단가를 산정하는 방안

- 정산원단위(원/Gcal) = 연료비 보전 과부족액/직전연도 실적 열판매량
 - 연료비보전과부족액 = 연간 총연료비-연간 총수익 중 연료비 부과분
 - 연간 총연료비: 연료비 연간총액
 - 연간 총수익 중 연료비 부과분: 연간 열판매수익(정산분제외)-(요금 상한적용 원단위×연간 열판매량)
- 재정산 규정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연료비 보전 과부족액을 실적 열판매량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

- (방안 2) 현행 한국지역난방 정산 방식을 사용

❖ 연료비 정산

● 방안별 평가

구분	방안 1 (실적 판매량 사용)	방안 2 (현행 방식, 예상판매량 사용)
장점	- 정산 업무가 단순 - 검증가능성이 높음	정산금액 회수기간의 예상판매량을 기초로 정산원단위를 산정함으로 합리적인 방안
단점	실적판매량이 회수기간의 판매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정산이 필요	예산서 상의 판매량은 사업자에 따라 추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및 검증가능성이 낮음

- 실제 실적판매량과 예상판매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적 판매량을 사용하는 것이 검증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함

❖ 연료비 정산

● (시행지침 안)

➤ 연료비 정산

- 사업자는 연료비연동제 적용 시 연료비 발생과 요금 적용간의 시차를 조정하여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 요금정산을 실시한다.
-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며, 직전년도 정산분은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 그 이전 요금조정 시에 적용할 수 있다.
- 정산원단위는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❖ 연료비 정산

$$* \text{정산원단위(원/Gcal)} = \frac{\text{연료비보전 과부족액}^{1)})}{\text{직전년도 실적 열판매량}}$$

1) 연료비보전 과부족액 = 연간 총 연료비 - 연간 총수익 중 연료비 부과분

- 연간 총연료비 = “1. 연료비 범위” 에 의한 연료비의 연간총액
- 연간 총수익 중 연료비 부과분 = 연간 열판매수익(정산분 제외) - (요금상한 적용원단위 x 연간 열판매량)

❖ 공통연료비 배분

- **(현황)** 공통연료비 배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사업자별로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
 - CHP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0개 사업자들은 CHP 결합원가를 매출액기준, 생산량기준, 메리트 기준 중에 하나를 사용
 - 매출액 기준: 14개 사업자 (전기와 열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결합연료비 배분)
 - 생산량 기준: 5개 사업자 (전기와 열 생산량 비율에 따라 결합연료비 배분)
 - Merit 기준: 1개 사업자 (열과 전기를 별도의 전용설비로 생산할 경우 원가차이를 이용)

❖ 공통연료비 배분

● 배분기준 별 장단점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매출액 기준	- 매출액 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 없음 - 수익에 대응한 비용의 산정에 적합	열, 전기의 생산이 일정하더라도 열, 전기의 매출액이 변동할 경우 배분비용이 변동
생산량 기준	열, 전기의 생산에 배분되는 비용이 열, 전기 매출액과 상관이 없음	- 열을 전기로, 전기를 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- 결산 자료의 검증이 어려움 - 생산량의 측정을 위해서는 설비, 효율 등 고려사항이 많아 측정비용이 높음
Merit 기준	열, 전기의 생산에 배분되는 비용이 열, 전기 매출액과 상관이 없음	대체설비, 대체설비 비용의 추정이 어려움

❖ 공통연료비 배분

● (방안 1)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

- 생산량 기준이나 Merit 기준과 달리 추정 절차가 필요 없고 검증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기준을 모든 사업자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
 - 전기사업회계규칙에서도 공통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사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
- 다만,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급격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채택하도록 할 필요

❖ 공통연료비 배분

● (방안 2) 현재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

- 사업자마다 사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현재 사용하는 방식을 인정
- 다만, 사업자가 배분기준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분방법을 공급규정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
- 생산량 기준, Merit 기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공통비용배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할 필요
-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적용할 배분방법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

❖ 공통연료비 배분

● 방안별 평가

구분	방안 1 (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)	방안 2 (현행 방식 유지)
장점	• 외부에 공시된 회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검증가능성이 높음 • 전기사업법과 일관성 유지 • 매출액 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추정절차 필요 없음 •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의 산정으로 연료비 원단위의 변동성이 낮음	• 현행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사업자의 수용성이 높음 • 더 우수한 배분방법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가능성
단점	• 열, 전기 생산이 일정하더라도 열, 전기 매출액이 변동할 경우 배분금액이 변동하는 문제	• 다양한 배분방식 채택은 감독기관의 검증 효율성이 낮음 • 전기사업법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 • 수익과 무관하게 비용이 산정되어 연료비 원단위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



IV. 열요금 신고서 검증 합리화 방안

❖ 문제점 및 현황

● 표준화된 신고 서류의 부재

- 공급규정 신고(변경) 신고서 외에 요금산출근거, 공급규정 변경사유서 등의 표준화된 서식이 없는 실정
- 이로 인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이 낮고 검증도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

● 사업자 신고의 비일관성으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

- 각 사업자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 필요시에만 신고
- 정기적인 요금 조정을 하지 않아 요금 조정률이 클 경우 정부 및 소비자의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

❖ 문제점 및 현황

● 정부 검증 인력 · 전문성 한계

- 검증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32개 사업자가 각기 다른 서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가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
 - 사업자마다 제출 양식이 다르고, 열원도 다르기 때문에 원시적 증빙 없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
 - 사업자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원가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크지 않지만, 열요금 조정을 산정, 정산원가 산정 등 연료비 연동제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은 없는 실정

❖ 문제점 및 현황

● 요금검증위원회의 실효성 부족

- ‘06년부터 요금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요금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요금검증위원회 개최 비용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며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
 - 또한, 현재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신고된 요금조정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음

❖ 개선방안

● 신고 서류의 표준화 및 보완

- 사업자별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
- 또한, 검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
 -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, 도시가스 요금 단가표, 원재료수불부, CHP 연료비 배부내역 등

❖ 개선방안

● 정기적인 자료제출 의무화

- 모든 사업자들에게 3개월마다 열요금 조정을 계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
 - 열요금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, 한난의 요금을 준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
- 요금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시스템에 각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여 사업자별 데이터 추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

❖ 개선방안

● 독립된 기관 선정을 통한 검증절차 수행

- 산업부에서 독립된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신고내역을 일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
- 사업자가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, 정부도 원가정보가 신뢰성이 있다는 전제로 열요금 연료비연동제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
 - 독립된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유착의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



THANK YOU!